

의견서

- 발 신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외 교육시민사회단체
- 수 신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 제 목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 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 문 의 :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배경내
017-214-3550, hrs3388@gmail.com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후퇴없는 제정을 위한 의견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이렇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올해 유난히도 굴곡이 많았던 서울교육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거침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서울시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는 아직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항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항해에 쏟아진 우려와 편하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새로운 교육',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와 열정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 올해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의 차례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열망으로 빚어낸 주민발의안을 지켜주십시오



한땀 한땀 소중히 모은 주민발의 서명지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모습

■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불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던 주민발의운동이 10만에 이르는 서울시민의 지지 서명으로 기적처럼 성사되었습니다. 급식조례, 서울시청광장조례에 이어 3번째로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성사된 조례안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기준, 국내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낯디 낯은 학생인권의 현실과 새로운 교육을 열망하는 교육주체들의 뜻을 오롯이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새로 만들어진 법은 과거의 법보다는 좀더 나은 것이어야 합니다. “경기도보다 더 진전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과노현 교육감도 일관되게 공약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지역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해서도 안 됩니다. 악의적 왜곡이나 부풀려진 오해로 인해 조례의 취지가 훼손되고 기준이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최근 논란이 된 몇몇 조항에 대한 비판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유엔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네스코 권고 등 국제사회는 일관되게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유엔 기준들은 또한 “**교실과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민주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논란은 해당 조항 자체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거 있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부러 선택한 악의적 왜곡에서 비롯된 측면이 큼니다. 김형태 교육위원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지었는데 마치 병원이 생겨서 환자가 생긴다고 말하는 꼴”이라며 일갈한 바 있습니다.

1.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반드시 명시되어야

■ **40명 학급당 적어도 2~4명 정도의 성소수자 학생이 존재하고 있음이 국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이 모욕과 구타, 차별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자살 위험에 내몰리거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4>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28~29항).**

■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정책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학교의 의무와 구체수단 등을 담은 교육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의 평등법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에게 포용적 학교환경을 조성할 교육당국의 의무를 구체화하

고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5>는 ‘비차별의 원칙은 권리의 인정과 실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에야 비로소 폭력은 멈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별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맞설 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거나 차별을 묵인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차별을 부르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주민발의안에 담긴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조항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광주학생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발의안은 여기에 ‘성별정체성’을 추가하여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였습니다.

2.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교과부도 수용한 정책 방향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생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미혼모 가운데 84.9%가 학업을 중단했고, 절반 이상(54.5%)이 학교로부터 자퇴나 휴학 등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미혼모 중 60% 가까이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06)에 따르면, 전체 미혼모 가운데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 24.9%에서 2000년대에 이르러 53.5%에 이를 만큼 증가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는 비혼 상태로 부모가 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임신과 학업 중단은 장기적으로 실업과 빈곤으로, 그리고 다시 자녀의 빈곤과 사회적 방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미혼모(아직 출산하지 않고 임신상태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교과부**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최소 1곳 이상 마련하기로 하고, 일선학교에 임신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조례로 안정화하는 것**입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CRC/C/KOR/CO/3-4,

28~29항).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구별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하거나 휴학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집회의 자유 조항 명시되어야

-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이용하여 ‘재단비리 해결’, ‘급식 개선’, ‘비민주적 학교생활규정 개악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체벌이나 부당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학교가 학생의 ‘집단행동’을 엄벌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광주병 위험 쇄고기 수입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거나 학생회장 출마를 저지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같은 부당 징계나 처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집회 개최나 참여를 부추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들이 학내에서 집회를 열게 되는 이유는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학내 집회의 사유는 학생인권 문제나 학교비리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굳이 집회를 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가 이러한 운영 원칙을 저버렸을 경우에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 근거가 없는 비판입니다. 집회의 목적이나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이나 강당에서 열리는 학생조회도 집회의 일종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학내 집회를 교육 경험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개최, 기획,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허가’와 ‘불허’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침묵이나 피켓팅,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열어 왔습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 활동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부의 지침, 교칙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CRC/C/KOR/CO/3-4, 40~41항). 지난 2008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내 집회를 학교측이 강제 해산하고 체벌 등을 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안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학교구성원의 안전이나 학습권과 충돌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제한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종교 자유 조항은 이미 확립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일 뿐

■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서울 유·초·중·특수학교 가운데 **종립학교는 무려 256개**에 이릅니다. 이 중 **기독교 설립 학교는 150개로 60%**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에 대해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미션스쿨의 근본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종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에게 종교 의식이나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이미 교육당국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입니다. 특히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 학생의 단식농성으로 '강요 금지'의 원칙은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종립학교들도 이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종립학교들이 관리·감독의 공백을 틈타 종교의식 참여를 거부하거나 대체 과목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왔고, 학생의 신앙을 이유로 학생회 활동 등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한 학교가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의무 참여를 요구하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2011.2.11 BBS 기사 참조).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자유 조항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 기준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하고 있을 따름이지, 새로운 기준을 종립학교에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 지난 10월 6일 발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도 종립학교들이 학생의 종교 자유를 실제로 제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면서 현재의 조치로는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CRC/C/KOR/CO/3-4, 38~39항).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 흐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위상은 남다른바입니다. 경남, 전북, 강원, 인천, 전남,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모델 삼아 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와 서울교육의 혁신을 바라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회가 민주시민들의 열망과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별첨 1 :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해설

※ 별첨 2 : 3,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의 근거가 없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비
- ☞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국제법으로서 조례의 근거 법규로 명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 초·중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학교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등이 포함됨
- ☞ 교육감의 감독 하에 있는 유치원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
- ☞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는 학생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학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입학(예컨대 이주아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본조에서 정의함
- ☞ 학원 및 탈학교에 대해서도 조례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 그 근거법령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서 초·중등교육법의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고, 당사자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교육의 경우 공교육에 있어서와 같은 책임 및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는 점에서 적용 제외. 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공교육내에서의 인권 향상이 학교 밖의 청소년 인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함.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조례에 미처 담지 못했거나 분명히 제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열거되지 않은 권리 내용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 방식도 학생이 참여한 상태에서 제정된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제한 요건을 두고 있음.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시안은 '교육목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학칙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감의 학생인권 실현 노력 의무를 명시함
- ☞ 2항은 초중등교육법 18조4항의 내용을 옮겨오되, 보호자의 노력 의무도 포함시켜 가정의 책임도 함께 강조. '존중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보호의 의무'는 학생의 인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실현의 의무'는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함.
- ☞ 학생에게는 권리와 함께 자기 인권을 알고 보호할 책임과 함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도 함께 있음을 명시함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 보장이 교사에게 '금지 목록'을 부여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삽입
- ☞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공통의 기반 위에서 있음을 강조
- ☞ 입시, 경쟁 교육이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교육을 지양할 것을 제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 차별 사유의 '예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관련 규정의 17개 사유에 더하여 학교 내 차별 양태를 고려한 징계, 성적, 경제적 지위 등을 추가함.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
- ☞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열독실 운영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 ☞ 체벌 역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의 한 형태로 보고 금지함
- ☞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은 가해 주체가 교직원인지 학생인지에 구분 없이 금지되어야 할 폭력으로 간주되어야 함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적 의무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임.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궁극적 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과정의 자의적 운용,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강제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 교육과정의 편법 운용이나 행사 참석 강요는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인권과 교사 권리의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기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해 심의 권한을 가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교육과정 및 교내외 행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산업체 파견된 현장실습생이 교육적 성격의 현장실습을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의 건강, 안전, 노동, 교육권을 동시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삽입.

☞ 학습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예를 비교적 상세히 열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책임을 명시.

☞ 교육관련 국내법 상 권리 향유자가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어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이주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별도로 명시.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1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2항에서 구체적 내용으로 야자, 보충 강제를 금지하고 있음. 강제교육은 동의에 반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학생이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학습부담을 강제한다는 점에서도 인권침해라고 바라본 것임

☞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비정규 교육활동의 다양성 보장 의무를 명시

☞ 현재도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선택권 보장'이 교육당국의 방침임.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동의가 아니라 학부모의 동의를 받고 있음. 조례를 통해 선택권의 주체가 학부모가 아닌 학생이라는 점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학부모이므로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와 더불어 학부모의 '비용부담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임. 즉 여전히 선택의 주체는 학생이어야 함

☞ 보충·야자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대해 흔히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습분위기를 훼손한다.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의 의사는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그러나 이미 사교

육 참가는 보충·야자를 빠질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음. 공교육에서 제공되는 정규교과 외 교육이 학생에게 매력적이고 진정한 동의를 기초한다면, 학교에 남기를 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학습분위가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봄.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추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런 비판은 조항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임.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학생들 다수도 과중한 학습 부담을 스스로 떠안게 됨. 이런 현실에서 선택권 보장만으로는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의 여건을 만들어내기 힘들. 따라서 학습권에 이어 휴식권도 동시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학습 부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임. 학생 인권이 상대적 잘 존중되는 나라에서는 학생의 학습 부담 시간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이나 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휴식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는 한편,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삽입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두발, 복장 등에 있어서 각자의 개성에 따른 생활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두발 자유란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자르든 길게 기르든, 염색을 하든 하지 않은 학생 자신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 파머, 염색을 금지하면서도, 곱슬머리를 스트레이트로 펴는 파머나 갈색 머리를 검정색으로 바꾸는 염색은 허용하기도 한다. 이는 권리 실현에 차등을 두는 행위일 수 있고, 특정 머리 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만들기도 함.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두발 길이 자유는 명시하되, 염색이나 파머 등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을 통해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음.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학생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절차를 통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기는 함. 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안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여 두발, 복장 등 용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 두발, 복장 자유와 관련해서는 탈선 우려,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탈선, 학습 분위기 훼손은 복장, 두발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됨. 또

한 두발, 복장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오히려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기도 함.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 우려에 대해서는, 교복을 착용하거나 두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빈부격차가 가려지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적 공개, 수업료/급식비 미납 공개,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가 함부로 누설되는 행위를 금지함

☞ 전체 학생을 범칙인 취급하는 일괄 소지품 검사와 압수, 사적 기록물 열람, 박음질된 이름표 착용 강요 등을 금지함.

☞ 일기검사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일기를 통한 글쓰기 교육은 생활글 쓰기로, 학생에 대한 이해는 상담 등을 통해서도 가능.

☞ 학교마다 금지하는 개인 소지 물품의 목록이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음(예: 악세서리 전면 금지 학교도 있고 종교적 의미를 지닌 악세서리만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규제를 아예 하지 않는 학교도

있음).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인 물품 소지에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일반 원칙만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함. 따라서 학교마다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

☞ 휴대전화 이외에 MP4,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에 대한 소지도 가능토록 함. 다만 수업시간(시험 시간) 중 사용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가능한 길을 열어둠.

☞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태. 실제 휴대전화에 대한 규정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임. 학급단위 자체 규칙에 맡길 뿐 학교단위의 규정이 없는 학교도 있는 반면, 수업시간만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사용·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학교, 쉬는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사용을 허가하는 학교, 아예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학교도 있음. 최근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학교반입 금지 조례 제정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 금지 교장단 결의 등이 있기도 했음(휴대전화 금지 조례 제정이 유보된 것은 휴대전화의 호신 기능, 학습 도움 기능 등에 대한 호소가 일정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

휴대전화 소지·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학습 분위기 훼손, 교사 수업권 침해, 휴대전화 중독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이미 중요한 통신수단이자 호신 수단(위급한 상황에서 연락, 폭력 상황 촬영 등)이 되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휴대전화의 소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놓은 바 있음.

☞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 역시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봄. 학생의 교우관계에 대한 제재는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예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봄.

☞ CCTV의 경우에도 설치의 정당성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설치 여부나 장소 등을 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다만, CCTV 설치 가능 장소, 운영 시간, 녹화 테이프에 대한 접근권자 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학생에게 개인 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징계 등 관련 정보의 공개 청구권 등을 보장.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학생의 정보인권 실현을 보조하고자 할 때 학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실질화하도록 함

☞ 학교장에게 청구된 정보의 공개 의무를 부여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학생의 사상/도서 검열(학생회장 공약, 외부 활동, 소지 도서나 신문 등), 강요된 진술서와 반성문 작성, 서약서 제출(신입생 선서, 순결서약,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등), 종교 강요 등의 관행을 금지

☞ 종교 강요 금지의 내용은 애초 교육부 지침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로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지침을 제정토록 하였음. 종교 강요 금지를 조례에 포함시켜 관련 규정의 위상을 상향 조정하는 의미가 있음

☞ 학생도 당연히 사상·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사상의 자유라는 용어가 학생에게 갖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시하였음.

* 헌법재판소 등에서는 양심을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반성문 작성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님. 반성문이라는 문서의 형식이 아니라 '거짓 진술이나 양심에 반하는 반성 강요'가 금지의 핵심임. 잘못에 대한 성찰과 교육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반성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이자 반교육적인 행위라고 본 것임.

☞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금지 항목을 세부화함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

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학생의 의사 표현, 언론 활동,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피켓팅, 전단지 배포, 교내외 집회, 모임 결성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

☞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학생을 운동권 만든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몰아넣는다, 교육을 정치화한다 등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집회의 목적, 양태, 규모 등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도(학생조회도 집회에 포함됨), 학교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부풀려진 것임. 또 실제 학생들 중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적극 행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 역동적으로 가동된다면, 굳이 집회까지 준비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임.

☞ 학생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예컨대 환경·생태 문제, 먹거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학습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정치 활동이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
-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 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 ☞ 학생자치기구의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현재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갖가지 제한 요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
- ☞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충함.

-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 학칙은 학교 내에서 헌법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는 만큼, 학생의 참여권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이기도 하나, 지켜지는 학교가 많지 않음. 따라서 조례를 통해 학생의 학교규정 제·개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나아가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49조 참고) 설치를 조례를 통해 보장함
- ☞ 특히 학생에게 학교규정의 제·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아울러 명시함. 이는 민주적 학교운영의 필수적 요소라고 본 것임.
- ☞ 학교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 수렴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수자 학생이나 학생대표의 의견만을 듣거나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일에 대비.

- 제19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학생자치기구, 학생대표는 물론 학생이 개인적으로, 또는 모임을 통해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 미성숙한 학생에게 정책 결정 참여권과 같은 중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20세기 중후반부터 국제사회는 학생에 대한 보살핌과 아울러 자기결정과 참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추세.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권리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 운영과 정책결정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함. 참여의 기회야말로 가장 유효한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점, 학생의 참여가 억압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학생들이 성숙한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교육의 목적이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시민의 육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성숙론은 참여권을 부정할 명분이 되지 못함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 상담 등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관련 제도의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 보호자 대상 교육 등을 명시

☞ 보호자에 대한 교육,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현장 교사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 현재 학생 지원 과정에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학교나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천 봉쇄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들을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라는 개념 아래 포괄하여 보장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 개인적 문화 활동은 물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감안하여 별도의 권리조항으로 구성하여 제시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전한 급식뿐 아니라, 급식 관련 정보 접근권과 의견 표명권을 명시.

☞ 직영급식, 의무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위한 노력 의무 조항도 삽입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생리공결제를 조려 수준에서 권리화하는 한편,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더욱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조차 없는 소외지역 학교를 고려하여 보건실 확충 노력 의무를 명시

☞ 보건교사의 역할, 학생이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건강 관련 조치(금연침 시술 등)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음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학생 징계 과정에서 적법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요구. 나아가 학생 징계가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 ☞ 학생에게 ‘대리인 선임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변론권을 더욱 강화하여 보장.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변론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임
- ☞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인 만큼 조례를 통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상벌점제의 벌점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학생 스스로 학생의 권리를 알 권리, 곧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
- ☞ 학생이 자기나 타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계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

답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적극적 조치에는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함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생 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명시. 개별 학교마다 전문 상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주아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류자격과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인정이므로 이를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의 날 지정 등을 통해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독려함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

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보장된 학생인권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임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 내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함. 인권교육은 장기적으로 학생인권에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조례에서 보장한 권리 내용이 실현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학생에게는 학기당 2시간 이상의 교육, 교직원에게는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려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킴

☞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모임을 권장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교육청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상 각종 연수에 학생인권 내용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간담회 정도로는 교육의 내실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인권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임

☞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를 교육감에게 부여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

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매년 학생인권 실태와 조례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학생인권 신장 계획이 보완, 입안될 수 있도록 함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실천 계획이 민주적, 안정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교육청의 학생인권 정책 심의기구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참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함.
- ☞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 선발 방식을 택함으로써 의지를 가진 학생의 참여 통로를 열어둠
- ☞ 정원의 1/5은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소수자 학생이 인권정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 학교별 학생인권 실현 상황을 세부 점검하기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추가 조치 의무를 부여
- ☞ 교육청이 제시한 학생인권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적극적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아울러 삽입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교육청과 시민활동의 협력 체계 구축을 명시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행정감시기구인 옴부즈퍼슨(Ombuzperson)제도를 원용, 학생인권 구제기구로서 상임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

☞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5인 이내의 학생인권옹호관은 각각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되, 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 등 주요 사안은 옹호관회의를 통해 합의하도록 함.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겸직 금지를 통해 직무의 독립성을 두텁게 보장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조사권, 시정 권고권, 제도 개선 권고권 등을 부여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별도의 조례 제정과 재정 확보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토록 함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과 전문조사원 등을 별도로 두도록 정함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상담실을 통해 학생인권옹호관과 지역교육청의 협조체계를 구축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유사. 강제조치는 취할 수 없음. 또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는 두지 않는 대신, 시정권고를 이행·보고하고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토록 함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활동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요구권, 질의권, 방문조사권 등을 아울러 규정함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학교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학생대표와 인권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규정 개정이 조례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함
☞ 부칙에 따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조례 발효 이후 6개월 이내 구성되어야 함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별첨 2] 3,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3,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 대한민국(CRC/C/KOR/CO/3-4)

배포

일반

국2011년 10월 6일

ADVANCE UNEDITED VERSION

원본: 영어

한글 번역: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현, 口스, 수수, 최종욱, 한날)

감수: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9월 19일 - 10월 7일)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아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개최된 1644차 및 1645차 회의(CRC/C/SR.1644 및 1645)와 2011년 10월 7일 개최된 1668차 회의(CRC/C/SR.1668)에서 대한민국의 제 3, 4차 통합 정부 보고서(CRC/C/KOR/3-4)를 심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한다.

I.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부응하여 3, 4차 통합 보고서(CRC/C/KOR/3-4)와 위원회가 제기한 이슈 목록(CRC/C/KOR/Q/3-4/Add.1)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해준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분석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성격의 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당사국의 다양한 부문의 대표단과 나눈 건설적인 대화에 감사를 표한다.

II. 한국 정부가 취한 후속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

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법 조치를 환영한다.

- a. 2011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
- b. 2011년 9월 민법 개정
- c.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d. 2011년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 e. 2010년 3월 가사소송법 개정
- f.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 g.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 h.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비준 또는 가입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CRPD)
-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5. 위원회는 다음의 제도적·정책적 조치 또한 환영한다.

- a.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2차 5개년 기본계획 수립

III. 주요 문제영역 및 권고사항

A. 협약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협약의 4조, 42조 그리고 44조 para. 6)

위원회의 이전 권고사항

6. 대한민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심의에 따른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 아동 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SC/KOR/CO/1, 2008)와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CRC/C/OPAC/KOR/CO/1, 2008)에 관한 제 1차 보고서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부 우려와 권고 사항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전혀 다루지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한다.

7. 위원회는 제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사항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아동권리소위원회의 설립, 포괄적인 체벌금지, 아동이 받는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고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협약에 대한 유보조항

8.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10월 협약의 제9조 3항(자녀의 부모면접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의 제21조 (a),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입장을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한 조항, 그리고 협약의 제40조 2항 (b)(v),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아동이 법률에 따라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 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의해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한 조항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

9.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의 완전한 적용을 방해하는 제 21조(a)와 제 40조 2항 (b) (V)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입법

10.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협약을 자국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법규가 불충분하며 법원이 협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위원회는 더욱이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금지에 대해 우려한다. 아주 협소하게 규정된 예외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법적금지 는 임신한 청소년들의 최선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한 불법적인 낙태의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학업의 강제적 중단 또는 입양을 목적으로 한 (자녀의) 강제 양도 등 임신 한 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11. 위원회는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적 결정에 충분히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의 확충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나아가 청소년 비혼모들이 안전하게 임신 중절을 할 수 있고 불법 임신중절이나 강제 입양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낙태에 대한 법률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

조정

12. 위원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서 조정이 줄어든 것에 우려한다. 이것은 특히 2008년 이래 아동정책조정위원회(CPCC)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개별 부처별로 이행되고 있는데 특히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각각 나뉘어져서 정책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범정부청소년정책위원회(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의 설립을 주목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에 있어 조정의 증진이 요구된다는 우려는 남아있다.

1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CPCC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가급적이면 충분한 권위와 적절한 인적·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적합한 기구를 설립하라.

b. 보건복지부나 여성부 등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관련된 전국 및 지방자치체 기구들간에 아동 권리 관련 업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협약의 이행을 위해 당사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2007년 5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채택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포괄적인 권리에 기반한 국가행동계획이 부족하다는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더욱이 위원회는 현 NAP의 종료 이후 후속작업이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협력속에서 협약 전반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과 감시 기제를 비롯해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아동과의 투명하고 충실한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의 NAP 준비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아동에 관한 유엔 특별총회의 결과문서인 "어린이에게 살기 좋은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과 그 중간 점검 보고서를 참조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적인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의 설립과 그에 동반된,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환영된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제도가, 아래 언급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할 수 있는 독립적이며 제 역할을 하는 기제를 결여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 a) KMCCR이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가 통제하는 예산에 종속돼 있음.
- b) 아동의 권리 그리고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거나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는 옴부즈퍼슨 체계에 대한 KMCCR의 권한이 부재함.
- c) 당사국이 취하는 연례 수행 평가에 KMCCR의 권한이 종속돼 있음. 여기에 KMCCR의 독립성과 지속성의 의미가 잠재적으로 함축돼 있음.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가 2009년 3월에 21% 축소되었고, 위원회의 이전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권리에 대해서 특화되지 않고 그대로임에 더욱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당사국이 KMCCR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그 목적은 KMCCR에 명확한 권한을 주는 것이며, 센터 뿐 아니라 옴부즈퍼슨 체계 둘 다가 협약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하고 독립적인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002)를 고려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리고 아동권의 특화를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자원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적 부문의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증가(2008년에 비해 16.5% 향상)를 환영한다. 하지만 당사국의 경제 발전의 진전 상태란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 재정 자원의 할당은 가용 자원에 비례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위원회는 깊이 우려하며 주목한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 당국들의 가용자원의 수준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19.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당사국의 경제발전의 진전 상태와 OECD 수준에 보다 근접하도록 협약 이행을 위해 할당된 재정 자원의 수준을 재평가하고 늘릴 것.
- b)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상이한 지자체 또는 지리적 위치에 사는 아동들 간의 격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역의 재정자원할당을 평가할 것. 이 효과를 위해서, 부문과 지자체의 예산 요구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아동권리 관련 지표에서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 예산 할당을 할 것.
- c) 예산 전반에서 아동에 대한 할당과 자원의 이용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입에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작성에 아동권의 접근을 활용할 것. 위원회는 또한 이 추적 시스템이 소년과 소녀에게 그러한 투입이 끼친 상이한 영향의 측정을 보장함과 더불어, 어떤 부문에 대한 어떤 투입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지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촉구함.
- d) 가능하다면, 자원 할당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예산(budgeting-by-results)에 착수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따를 것.
- e) 공적인 대화, 특히 아동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예산만들기를 보장할 것.
- f) 차별해소를 위한 사회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불리하거나 취약한 아동에 대한 전략적 예산 수준을 정하고 경제위기, 자연 재해 또는 기타의 긴급상황에서도 그 예산의 수준이 보장되도록 할 것.
- g) “아동 권리를 위한 자원들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위원회의 일반 토론의 날에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를 고려할 것.

자료 수집

20. 위원회는 당사국에서 자료 수집 수행에서의 방법론적 일관성의 결여와 협약이 포괄하는 영역별 자료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 상대적 빈곤 및 극빈 상태의 아동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빈곤상태의 아동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과 빈곤 감소를 위한 지방 정부의 예산과 역량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가 없음에 우려한다.

21. 위원회는 특히 민족, 성, 나이, 지리적 위치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협약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산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의 수립을 당사국에 강력히 권한다. 위원회는 자료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해 당사국이 여러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또한 권고한다.

유포, 인식향상 그리고 훈련

22. 교과 과정에 인권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아동, 일반 대중 및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협약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하다.

23.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로써 인식향상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학교 교과 과정에서 아동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많이 포함할 것.
- b) 아동과 더불어 또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 집단에게 협약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보장할 것.
- c)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국제협력

24.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늘려왔음을 인정하지만,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는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2015년까지 0.7%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GNP의 0.7 퍼센트를 달성할뿐더러 가능하다면 그 목표를 초과할 것을 장려한다. 또한 아동 권리의 실현이 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맺은 국제협력협정의 최우선 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수혜국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한국이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 하나로 꼽히는 당사국의 기업 부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을 환영한다. 그 관심은 지금으로서는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 기준과 최저임금을 다루는 당사국의 법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위원회는 자국영토에서나 외국에서나 기업 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인 법률 구조가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하며 주목한다.

- a) 당사국은 강제 아동 노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아동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연루된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그리고 유럽의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 b) 당사국에서 발주된 사업들은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토지 임대 계약을 맺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c) 당사국이 체결했거나 보류 중인 자유무역협정(FTAs)에 대한 협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권영향 평가도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기본 보고서를 채택한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8/7과 그 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의 신설을 요청한 2011년 6월 16일의 결의안 14/7, 두 결의안 모두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탐색할 때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공급망 또는 협력 업체에 의해서건 간에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활동에서 반인권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에 근거지를 둔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법률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책임성 모델의 채택을 증진할 것. 보고에 아동권 지표와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증진돼야 하며 아동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요구될 것.

b) 강제 아동 노동으로 생산된 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고 자국 시장에 들어오는 생산물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도록 요구하는 무역 협정 및 국내법을 이용하도록 생산물 반입을 모니터링할 것.

c) 자국 기업들이 외국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프로젝트가 원주민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인권/아동권리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 사전에 인지된 동의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와 협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d) 자유무역협정(FTAs)을 협상하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아동 권리를 포함한 인권 영향 평가가 수행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할 것.

B. 일반적 원칙(협약 2, 3, 6, 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에 대한 입법적 정의가 성적 지향이나 국적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더구나 위원회는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의 아동에 대한 차별, 난민아동, 장애아동, 비혼모, 특히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 차별의 복합적인 형태에 대해 우려한다.

29.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a) 협약 제2조를 충실히 따르는 법률을 채택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b) 인식향상, 대중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여, 취약하거나 소수자 상황의 아동을 향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모든 조치를 취할 것.

c) 청소년 비혼모를 포함한 비혼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생명, 생존 그리고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자살방지에 관한 기본계획(2004)’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자살문제에 임하는 당사국의 노력을 호의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한 깊은 우려는 여전히 여전하다.

3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제도적 및 행정적 조치들의 지침으로 그 연구결과를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영향받는 아동의 가족과 교육체계 둘 다에서 아동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그러한 정책과 수단에는 영향받는 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적절한 제공과 심리상담서비스로 지원되어야만 하는 적절한 예방적 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32. 위원회는 당사국의 아동관련 법률에서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부족하며 아동에 관한 당사국의 정책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법적 및 행정적 결정에서 아동이익최선의 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우려한다.

33. 위원회는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서 뿐 아니라 모든 입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에 아동이익 최선의 원칙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

34.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국가가 조직한 회의의 성립을 환영하는 한편 당사국의 법 절차나 사회적 태도에 관한 맥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한 아동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는 여전히 있다.

35. 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도록 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당사국이 법률의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며 당사국은 협약 12조에 따라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교와 교육 체제 속에서의 훈육절차를 포함하여 법원과 행정 기구에 의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청취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b)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고 청취될 아동의 권리에 대하여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광범위한 사회에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아동의 견해가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의 수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d) 아동의 청취될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2009)를 고려할 것.

C.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19, 37조)

출생 등록

36.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년 비혼 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비호처를 구하거나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37. 협약의 7조에 합치되도록, 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히 지시하고 검증하도록 보장할 것을 또한 당사국에 촉구한다.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

38. 학교에서의 강제 종교교육에 대한 당사국의 금지를 긍정적으로 주목하는 한편, 위원회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그 학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계속 제한하고 있음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행 조치들이 종교의 다양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적절히 촉진하지 못하거나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특별한 요구나 제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도 우려한다.

39. 위원회는 협약의 14조 3항에 합치되도록 당사국이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더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조치들은 식사 시 지켜야 할 것들을 포함하여 특정 종교의 특수한 요구나 제한을 정당하게 고려하며 유의하는 것으로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에 이바지하는 환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취해져야 한다.

표현과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CRC/C/15/Add. 197, para. 37)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아동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학교 밖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데에도 우려를 표한다.

41.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반복하며, 협약의 12-17조의 견지에서, 학교 안팎 모두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 (i)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ii) 학교 위원회의 운영에 의미있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

을 포함하여,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게끔 보장하도록 법률과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적인 보호 상황에서 체벌이 지속적으로 만연돼 있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우려(CRC/C/15/Add.197, para. 38)를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가정, 학교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잘못된 처우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 그리고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지도를 포함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긍정적이며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것.
- c)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당사국 내에 아동에 대한 물리적 및 심리적 학대와 방임의 증가와 그런 학대를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왕따(bullying)가 그 빈도와 심각성에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지역 아동 보호 센터의 설립을 환영하는 한편, 위원회는 여전히 센터의 수가 제한적이며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을 위한 지원의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학대 보고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정당하게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왕따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와 방임을 보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 b) 지역 수준에서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할당하여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할 것. 이런 자원할당은 보호기관의 효과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재활 지원을 위한 제공이 포함된다.
-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13(2011)을 고려할 것.

46. 아동 폭력에 관한 UN 사무총장의 연구(A/61/2009)를 참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장려한다.

- a) 특히 젠더에 유념하면서, 아동 폭력에 관한 UN 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근절을 최우선시할 것.

- b) 다음번 정부 보고서에는 UN 연구의 권고에 대한 당사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특히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특별 대표가 강조된 내용을 포함할 것. 즉,
- (i) 아동에 대한 폭력의 모든 형태를 예방하고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각 국에서 개발할 것.
 -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 폭력에 대하여 명확한 국내법적 금지를 도입할 것.
 - (iii) 아동 폭력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포 및 연구 의제를 다루는 국가 시스템을 공고히 할 것.
- c)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HCHR),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D.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협약 5조, 18조(paras. 1-2), 9-11조, 19-21조, 25조, 27조(para. 4) 및 39조)

가정 환경 상실 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 아동에게 가족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고 그런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 시설을 설립한 당사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런 대안 양육 기관에 대한 평가가 단지 그러한 시설의 행정적인 운영만을 평가하고, 양육의 질, 기술과 전문적인 훈련, 제공된 처우를 평가하지 않는 것에 우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그런 기관에서의 학대 또는 방임 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 절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부모와의 교류가 단절된 아동을 위한 추적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우려한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양육의 질,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정규 훈련, 협약 제25조에 부합하여 대안 양육을 제공하는 공적 및 사적 기관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처우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보장할 것.
- b) 대안 양육 환경에서의 아동 학대에 대한 진정 접수와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절차를 보장할 것. 그리고 학대의 피해자가 진정 절차, 상담, 의학적 치료 및 기타 적절한 회복을 위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c) 대안 양육 환경의 아동에게 부모와 교류하고 교류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
-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

입양

49. 발효되면 입양에 대해 가정법원의 승인 결정을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과 민법

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 위원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중간 기간 동안 아동의 입양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또한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 a) 입양에 관해 규제 감독하도록 명확하게 위임받은 중앙 당국의 부재와 해외입양 절차에 개입할 당사국의 소관 당국의 의무를 명시한 법률의 부재
- b) 입양아동이 13세 미만일 경우 아동의 의사청취의 부재
- c) 청소년 비혼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입양 보내진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 비혼모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위한 아동의 양도를 승인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점
- d) 입양 후 가용서비스의 결핍, 특히 해외 입양된 아동 그리고 그들의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언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조치의 부족
- e) 당사국이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

50.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에 언급한 해당 법의 시행 이전의 입양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법률을 개정할 목적으로 해외 입양 제도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협약 21조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그러하다.

- a) 헤이그 협약의 6조에 부합하도록 한국의 '중앙입양정보원'이 효율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과 더불어 명확한 권한을 규정할 것. 그리고 해외에 입양되어 한국어에 익숙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의 이러한 시설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입양 후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할 것.
- b) 입양 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합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의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
- c) 자녀를 입양 보낼 때 청소년 비혼모의 동의를 필수적이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동의를 사실상 또는 실제적인 강요하에서 획득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을 제공할 것.
- d) 해외 입양의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규제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가진 명확한 권한의 중앙 당국에 의한 승인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 e) 해외 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의 6조, 18조(para. 3), 23조, 24조, 26조, 27조(paras. 1-3))

장애 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장애 아동 재활 프로그램 및 장애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의 장애 아동 지원이 단지 저소득층 가족에게만 제공되고 물리치료와 직업 훈련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수 교육 교사와 지도자가 부족하여 장애 아동, 특히 여아가 교육을 받을 때 당면하는 어려움과 장애 아동 대다수가 비장애아동과 분리된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9호(CRC/C/GC/9)를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모든 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것.
- b)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특수 교육 교사의 수를 늘릴 조치를 취하며 나아가 장애아동의 교육적 필요가 완전히 채워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교 감독자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 c) 특히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특수교육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
- d) 가능하면 언제든지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에게 제공될 것을 보장할 것.

건강과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당사국의 건강관리 예산과 건강 보험의 제공을 위한 특별예산의 할당이 증가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 금연 캠페인 역시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건강관리 예산이 전체 예산 중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대형 의료 센터와 작은 지역 병원간의 소아 의료 및 응급 의료의 가용성과 질의 격차에 대해서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건강 할당 재정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저소득층 가족이 무상으로 의료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 및 공공 의료 시설 체계를 수립하라는 당사국에 대한 이전의 권고(CRC/C/15Add.197, para. 49 (a))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 및 응급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중소규모의 지역 병원들에게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 자원을 늘려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정신 건강

55. 위원회는 아동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특히 전국적으로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전반적인 아동의 정신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온 것 그리고 아동사이에서, 특히 여아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증가해온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자살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진단 도구의 실행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 도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려한다.

56. 위원회는 아동들의 우울증과 자살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아동 정신 건강 관리 정책을 개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자살충동 행동, 특히 여아들의 자살충동 행동의 효과적 예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 증진과 예방 활동, 외래 및 입원 환자의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투자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아동의 시설 수용을 최대한 삼갈 것을 당사국에 장려한다. 더 나아가, 자

살의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진단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 진단도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적절하게 진찰 받을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상기의 것들을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는 정신보건적 접근에 부가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에는 대안적으로 자살에 관련된 사회적 및 가족적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텔레비전 아동 프로그램 방영 시간에 다과류를 생산, 가공,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방영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호의적으로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아동이 건강에 해로운 영양 섭취로부터 초래되는 아동기 비만 및 여타의 건강상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된다. 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층 더 우려한다.

58. 더욱이 위원회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의무적인 시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성 및 출산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또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율이 높은 것과 이에 상응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임신중절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와 술,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증진시킬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그런 가운데, 당사국은 그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건강한 생활양식을 이끌고 균형잡힌 소비 양식을 실천할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할 것, 그리고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 장려된다.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 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 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과 노인,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당사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헌법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 명확하고 의무적인 재정 할당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만 한다.

F. 교육, 여가 그리고 문화 활동 (협약의 28, 29, 31조)

직업 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62. 당사국의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아동의 놀이와 오락과 문화 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려는 프로그램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육체제에서 여전히 현저한 심각하게 경쟁적인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과외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 특히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과외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그러한 과외의 재정적 비용 때문에 증대되는 것과 과외가 아동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담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왕따(bullying)의 가혹함과 빈도가 증가하는 것, 특히 외국 출신의 아동들에 대한 왕따, 그리고 이러한 왕따를 행하는 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63.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현재의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적에 관한 협약 29조와 위원회의 일반논평 1호(2001)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
- b) 교육과정 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그 귀결인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에 대처할 목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 c) 협약의 31조에 부응하여, 적절한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 d) 당사국의 다음 번 보고서에, 포함(inclusion)을 위한 학교 접근성에서의 평등 성취와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 e) 외국 출신의 아동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왕따에 대처하는 조치와 왕따의 감소를 목적으로 한 계획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할 조치를 강화할 것. 이러한 조치들은 휴대전화와 온라인 가상 만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교실 밖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harassment)을 또한 다뤄야만 한다.

G. 특별 보호 조치 (협약의 22, 30, 38, 39, 40, 37 (b)-(d), 32-36조)

비호 신청과 난민 아동

64.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그 영토 내에서 태어난 난민과 비호 신청 아동에게 시민 지위의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아동의 취약한 상황이 노동시장 접근에 제약이 있고 생계 지원이 부족한 그 부모의 상황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학교 입학이 부모(들)의 이주민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이 교육 접근에 제한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난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를 우려한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난민 또는 비호 신청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의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비호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및 사회적 원조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당사국이 공무원들에게, 특히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접촉하는 있는 경우에, 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더욱이 위원회는 당사국의 이주법 하에서는 난민과 비호 신청자와 동행 없는 아동이 구금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구금이 발생했을 때, 아동에게는 부적합한 시설이며 송환 명령의 집행이 지연될 경우 법적인 시한이 없는 그러한 구금에 대한 주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재심을 보장할 법조항이 전무한 것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67.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과 비호 신청자나 동행 없는 상태의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송환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아동의 권리에 민감하며 권리를 존중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재심과 명확하게 규정된 시한을 따르는 시설에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한국 생활에 외국인의 통합을 촉진하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채택과 불법이주자 아동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락하는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자녀의 초중등 교육 이수를 부모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당사국의 법률이 한국의 국민이 아닌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이주자의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실질적으로 교육에 접근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하길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그 협약의 조항과 합치하게 만들것을 장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2005년 청소년 노동 보호 종합 대책’의 마련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관해서 우려한다.

a) 노동하는 아동의 증가

b) 아동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만 15세 이상의 아동의 야간노동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미성년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을 흔히 충족시키지 않는

것.

- c) 쉬는 시간을 무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불충분
- d) 노동 감독이 불충분한 것.
- e)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성폭력, 폭행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노동 아동의 문제
- f) 연예인과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 수의 증가.

71. 위원회는 당사국에 권고한다.

- a) 아동 노동을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근본 요인을 다루는 조치를 취할 것.
- b) 야간노동 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시행과 최저임금 지급을 포함하여 만 18세 미만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수립된 기준이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
- c) 변칙적인 노동 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할 것.
- d) 노동환경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감독을 증진할 것.
- e) 노동환경에서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다루고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을 보장하고 그러한 문제가 부각되는 경우 책임성과 재화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의 가용성을 보장할 것.

성적 착취

72. 위원회는 2008년 청소년 성 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이 개정안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 지원과 법적 및 의료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의 설립과 상담, 보호 및 치료의 제공을 환영한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 a) 당사국에서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비율의 포르노그래피의 소비
- b) 아동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성, 소년 또는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피해자 재활 서비스의 부족
- d) 성폭력 발생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할당의 삭감.

73.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이 본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와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b)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한 제공, 전달 또는 갖은 수단을 통한 수락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범죄의 심각성과 균형을 이루고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할 것.
- d) 형사 책임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 e) 인신매매와 성착취 피해자의 가장 공통적인 출신국을 고려하여 다언어 체제를 포함하여 소녀 뿐 아니라 소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률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여성과 아동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하여, 또한 국내에서 계속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자에 대한 기소와 유죄율이 낮은 것에 우려한다.

75.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 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자들이 그 범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유엔의 '초국가적범죄조직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 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의정서 2조와 3조에 해당하는 모든 위법행위가 한국정부의 법률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CRC/C/OPSC/KOR/CO/1, para. 30)를 반복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앞서(35번 문단) 언급했듯이 제 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재가 아동 매매로 귀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의정서 3조 1항에 관련된 위법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대한민국 거주자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혹은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그 범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에 관해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우려(CRC/C/OPSC/KOR/CO/1, para. 38)를 반복한다.

77.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반복한다.

- a) 한국의 국내법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보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b) 의정서 4조 2항의 견지에서,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국적자나 거주자에 의해서 자행되거나 혹은 그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역외관할권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만 18세 미만자의 강제 징집 또는 적대행위 관여를 범죄화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CRC/C/OPAC/KOR/CO/1, para.12)를 반복한다.

79.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 a) 아동의 징집과 적대행위 관여에 관한 의정서의 조항 위반을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
- b) 모든 법률이 의정서 조항에 완전히 부응할 것을 보장할 것(CRC/C/OPAC/KOR/CO/1).
- c) 모든 군사 규범, 교범 및 여타의 군사적 명령이 의정서의 조항과 정신에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CRC/C/OPAC/KOR/CO/1, para.13).

소년 사법 행정

80. 위원회는 높은 재범률을 포함하여 청소년 비행과 높은 범죄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런 상황전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그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발생하는 근원을 다루기보다는 아동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목표로 한 효과적인 조치 대신에 성인들이 구금되는 구금 시설에 아동을 구금하는 것을 포함하여 오로지 징벌적인 조치에만 치중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에 우려하며 주목한다.

더불어 위원회는 청소년 전담 검사의 임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소년사법에서 그들의 효과적인 전문화를 허용하는 상황이 제공되지 않기에 청소년 전담 검사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높은 재발률과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위원회는 특히 협약 37, 39, 40조와 소년사법집행에 관한 유엔 최소기준(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 지침(리아드 가이드라인),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 규칙(하바나 규칙), 형사법시스템에서 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비엔나 지침, 그리고 소년사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10호(2007) 등 여타의 관련 기준들에 소년사법체제가 부합되도록 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 a) 당사국 전역에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 전문 법원을 설립할 것.
- b) 형법 위반으로 고발된 아동에게 소송절차의 초반과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절한 법적 원조와 기타의 원조를 제공할 것.
-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재활 센터,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을 절대로 성인범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아동 배려적인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 거취 결정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보장할 것.
- e)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보장하며 가능한 한 전환,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자유를 박탈하는 것 외의 다른 대안 조치들을 활성화할 것.
-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 간 패널과 UNODC, UNICEF, OHCHR 및 비정부기구들을 포함한 패널의 구성원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수단들을 사용하고, 패널의 구성원들에게 소년사법의 분야에 있어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

범죄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 혹은 만 16세 미만의 증인을 비디오 녹화를 통해 증언을 하게 하는 것,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과 법적 절차는 다음의 이유로 부적절하다.

- a) 피해자와 증인은 공무원들이 녹화에 익숙지 않기에 증언을 빈번히 반복해야 하고
- b) 법원은 비디오의 유효성을 자주 인정하지 않으며
- c) 피해자와 증인은 적절하게 그들을 배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주 반대심문의 대상이 되며
- d) 가해자와의 재회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요구되기도 하며

- e)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적절하며
- f) 피해자는 자주 경찰관이나 의료진 등 공무원에 의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 g) 피해자를 다루는 의료 또는 법 집행 전문가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언어폭력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83. 위원회는 더욱 아동 친화적인 절차상 규칙을 개발하고, 피해아동이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에 대해 보다 큰 존중을 받게 보장하길 권고하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법 조항과 규칙을 통해 학대, 가정 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이자 증인인 아동에게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할 것을 보장할 것, 그리고 한국정부가 ‘아동피해자와 증인이 관여된 사건 사법에 관한 유엔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에 첨부)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H. 국제 인권 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아동 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조약을 비준하기를 장려한다.

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에서 본 협약과 여타 인권 조약의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아세안 여성과 아동 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J. 후속 조치와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적용 가능할 때마다, 적절한 고려와 더 나은 행동을 위하여 이 권고를 정부의 구성원, 국회, 지방 의회 및 기타 지방 정부에 보냄으로써, 이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위원회는 더 나아가 본 협약과 그 이행에 대한 토론과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출한 3, 4차 합본 정기 보고서와 서면 답변, 그리고 위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최종 견해 포함)들이 광범위한 대중, 시민사회조직, 청소년 단체, 전문가 집단과 아동에게 인터넷(그러나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을 통하는 등 한국어로 널리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길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5차와 6차의 합본 정기 보고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할 것과 그 보고서에 이 최종 견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담을 것을 부탁한다. 위원회는 2010년 10월에 채택된 보고서 작성 지침(CRC/C/58/Rev.2)에 유념할 것과 차기 보고서가 지침에 따라 60쪽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지침에 맞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 이상의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당사국은 위에 언급된 지침에 맞춰 보고서를 재고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침에 맞추지 않은 보고서를 재검토 뒤 다시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약 기구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다.